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004호
----------	--------

제출년월일 2022. 8. .  
제출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통·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리 신설 및 지역여건에 따른 반 구획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통·리·반장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정비

- 통·리·반장의 자격 삭제 (안 제6조)
- 통·리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 삭제 (안 제7조)
- 반장의 선임·등록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
- 통·리·반장의 임기 삭제 (안 제9조)
- 통·리·반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2조)

나. 통·리 신설 및 지역여건에 따른 반 구획 조정

- 통진읍 : 서암9리-서암12·14리 경계조정, 마송17리, 마송18리, 마송 19리 신설 등
- 양촌읍 : 양곡26리 신설, 학운11리 반 신설
- 장기본동
  - 장기1통-장기2통 경계조정, 장기11통 공동주택 명칭 변경
  - 장기31통 신설
- 사우동 : 사우15통-사우31통 경계조정
- 운양동 : 운양4통 반 신설, 운양4통-운양7통 경계조정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31. ~ 2022. 6.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나) 경 기 도 : 자치행정과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제7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6조,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리·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중전의 제10조)제3항 중 “신분증”을 “통리장증”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를 제9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전의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별표 1 중 통진읍 서암9리, 서암12리, 서암14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읍 서암9리	제1반	759-34, 759-35, 759-13, 759-17, 759-2, 759-37, 759-41, 759-61, 760-7, 759-34, 759-16번지
	제2반	760-3, 764, 765-4, 766-2, 768-5, 769-5, 833번지
	제3반	768-2, 842-2번지
통진읍 서암12리	제1반	746-1, 756-1, 756-18, 756-2, 756-3, 772-6, 773, 790-2, 790-5, 790-6, 933-30번지
	제2반	98, 743, 779, 산94, 744, 799, 740, 742, 745, 97번지
통진읍 서암14리	제1반	885~896, 946-1, 산67-11번지
	제2반	828~831, 839-1, 839-2, 839-3,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 840-7, 840-10, 840-17, 841-3, 846~848, 852-3, 852-8~852-13, 933-28번지
	제3반	773~788, 880-6번지

통진읍 마송11리, 마송12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읍 마송11리	제1반	509, 510, 512-3, 514-1~5, 515-1~5, 516, 516-1~2, 517-1~4, 519-1~5, 520, 521-1~5, 522-1~6, 523, 524-1~8, 525, 528-1~8, 529-1~4, 530-1~10, 533번지
	제2반	518-1, 526, 527, 531-1~7, 532-1~10, 534, 535, 536, 536-1, 536-2번지
	제3반	568-7, 537-6, 548-4, 548-3, 548-2, 548-1, 604-1, 14-88, 14-82, 15-3, 15-7, 15-1, 14-37, 14-27, 14-12, 14-36, 14-11, 14-26, 12-6, 12-7, 12-4, 12-13, 11-12, 11-5, 11-12, 11-11, 10, 9-4, 6-3, 6-2, 6-1, 5-1, 7-1, 8-6, 24-5, 28-4, 27-8, 605-5, 605-4, 605-3, 605-2번지
	제4반	544-9, 32-5, 31, 31-1, 546-1, 556-7, 557-5, 615-1, 558-3, 558-2, 558-1, 556-3, 556-2, 556-1, 555, 1-2, 565-12,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8, 564, 564-1, 564-2, 565-6, 565-5, 565-4, 565-3, 565-2, 565-1, 613-1, 553, 553-1, 551-1, 551, 872, 877, 881, 882, 28-5, 27-2, 543-2, 543-1, 542-2, 542-1, 541-2, 541-1, 541-5, 541-4, 544-1번지
통진읍 마송12리	제1반	580-1, 582-1~7, 583-1~10, 584-1~10, 626-1, 630-2번지
	제2반	580-2~4, 581-1~5, 585-1~8, 586-1, 587, 588, 588-1번지
	제3반	571-1~9, 572-1~6, 573-1~10, 568, 568-1번지
	제4반	574-1~8, 575-1~5, 576-1~4, 569, 577, 578번지

통진읍 마송16리 다음에 마송17리, 마송18리, 마송19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읍 마송17리	제1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1동	101~13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704호 105~1705호 상가동
	제2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2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제3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3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603호 104~1504호 105~1505호
	제4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4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제5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5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제6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6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제7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7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105~1805호
통진읍 마송18리	제1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1동	3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상가동
	제2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2동	1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305~1505호 306~1506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107~1507호 108~1508호
	제3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3동	101~1501호 103~1503호 104~1504호 105~1505호 306~1506호 307~1507호 308~1508호 109~1409호 110~1410호 111~1411호 112~1412호
	제4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4동	101~1401호 102~1402호 103~1403호 104~1404호 105~1405호 306~1406호 307~1407호 308~1408호
통진읍 마송19리	제1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1동	301~901호 302~902호 303~1203호 304~1204호 305~1205호 306~1206호 307~1207호 308~1208호 309~1609호 310~1610호 311~1611호 312~1612호 상가동
	제2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2동	101~1601호 102~1602호 1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107~1607호 308~1608호 109~909호 110~910호
	제3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3동	101~1601호 102~1602호 3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107~1607호 108~1608호 109~1309호 110~1310호
	제4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4동 101~1601호 102~1602호 3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107~1607호 108~1608호 109~1309호 110~1310호
	제5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5동 301~1601호 302~1602호 303~1603호 304~1604호 305~1205호 306~1206호 307~1207호 308~1208호 309~1209호 310~1210호 311~1111호 312~1112호

양촌읍 양곡25리 다음에 양곡26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양곡26리	제1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1동 201~1201호 202~1202호 203~1203호 204~1204호
	제2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1동 205~1205호 206~1206호 207~1207호 208~1208호 209~1209호 210~1210호 211~2111호 212~1212호
	제3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2동 101~1901호 102~1902호 303~1903호 304~1904호
	제4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102동 205~1905호 206~1906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아파트		207~1907호 208~1908호 209~1909호
	제5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2동	110~1910호 111~1911호 112~1912호 113~1913호
	제6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3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제7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3동	305~2005호 206~2006호 107~2007호 108~2008호 109~2009호
	제8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3동	110~2010호 111~2011호 112~2012호 113~2013호
	제9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4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703호 104~1704호
	제10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4동	105~1705호 106~1706호 107~1707호 108~1708호 109~1709호
	제11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4동	310~1710호 311~1711호 112~1712호 113~1713호
	제12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5동	201~1201호 202~1202호 203~1203호 204~1204호 205~1205호 206~1206호 307~1207호
	제13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5동	308~1208호 309~1209호 310~1210호 311~1211호 312~1212호 313~1213호 314~1214호 상가동 101 ~ 108호

양촌읍 학운11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학운11리	제1반	2778~2798, 2836~2842번지
	제2반	2799~2825번지
	제3반	2826~2835, 2850~286번지
	제4반	2873~2912번지
	제5반	2843~2849, 2913~2927, 2828~2944번지

장기본동 장기1통, 장기2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장기본동 장기 1통	제1반	113, 131, 132, 135, 138, 140, 143, 144, 147, 149, 154, 156번지
	제2반	110, 118, 125, 126, 128, 133, 134, 135, 138, 155번지
	제3반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55, 57, 63, 90~91, 104, 114, 178-10, 178-23, 178-25, 178-26, 178-11, 178-16, 178-19, 178-20, 178-27, 178-21, 178-22번지
장기본동 장기 2통	제1반	1, 4~5, 7~15, 17~22, 24~25, 27~42, 44~50, 52~75, 77, 80~86, 88~89, 93~94, 96, 277, 280, 283, 284~286번지

장기본동 장기11통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장기본동 장기11통	제1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1동	101호~1504호
	제2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2동	101호~1803호
	제3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3동	101호~1804호
	제4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4동	101호~1804호
	제5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5동	101호~1702호
	제6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6동	101호~1804호
	제7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7동	101호~1804호
	제8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8동	101호~1803호
	제9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어울림	309동	101호~1504호

장기본동 장기30통 다음에 장기31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장기본동 장기31통	제1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데우스 라세느	101동	201호~210호
				102동	101호~103호 201호~208호
				103동	101호~104호 201호~208호
				104동	101호~111호 307호
	제2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데우스 라세느	105동	101호~117호 306호
				106동	101호~109호
				107동	101호~114호 309호
	제3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데우스 라세느	108동	101호~106호
				109동	101호~104호 107호~110호
					205호~206호 304호 307호
				110동	101호~106호
				111동	101호~106호
	112동	101호~105호 108호~114호 305호~308호			
	제4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데우스 라세느	113동	201호~208호
				114동	101호~103호 201호~208호
				115동	101호~108호
				116동	101호~108호
	제5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데우스 라세느	117동	101호~104호 107호~110호 205호~206호 304호 307호
118동				101호~104호 107호~110호 205호~206호 304호 307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119동 101호~106호	
			120동 101호~106호	
			121동 101호~105호 109호~113호 305호~309호	
		제6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122동 101호~107호	
				123동 101호~106호
				124동 101호~109호
				125동 101호~104호 109호 201호~208호
			제7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	126동 101호~104호 201호~208호
				127동 101호~104호 109호 201호~208호
				128동 101호~107호

사우동 사우15통, 사우31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사우동 사우15통	제1반	1155~1159, 1162~1170, 1172, 1176~1239, 1366번지
	제2반	1309-3~1309-8번지
	제3반	1255~1256, 1297, 1304,1305, 1309, 1309-1,1309-2, 1309-9~1312, 산47, 산49번지
	제4반	1246~1254, 125~1296번지
사우동 사우31통	제1반	1116~1130번지
	제2반	1134~1140번지
	제3반	1141~1153, 1160~1161, 1171, 1173~1175, 1369, 1373,번지
	제4반	1132~1133, 1376번지

운양동 운양4통, 운양7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운양동 운양4통	제1반	790, 880, 882~9, 892, 894~6, 931, 933~9, 940~6, 951-1, 952~9, 961~3, 963-1,2,4, 967번지			
	제2반	840~1, 866, 874, 890~1, 904~9, 921~4, 928, 930~1, 963-3, 964~5, 977~9, 980, 1001~8, 1049, 1053~6, 1058, 1060~9, 1070~2, 1166~9, 1171, 1185~7, 1190~9, 1211번지			
	제3반	826~9, 830~9, 875~6, 883, 950~1, 1205~9, 1215~6, 1245~6, 산98, 산109-2번지			
운양동 운양7통	제1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1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제2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2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8호~608호
	제3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3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8호~608호
	제4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4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07, 1007-6, 1008-4, 1233-10, 1011-3, 1012-2, 1013-2, 1013-7, 1013-8, 산147-1번지			

별표 2 중 통진읍 마송리, 양촌읍 양곡리, 장기본동 장기동 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동·면명	통·리명	정원
통진읍	마송리	18
양촌읍	양곡리	23
장기본동	장기동	31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행 정 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행정과장 박 영 상
	팀 장 직위·성명	행정팀장 최 신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박 민 아(☎253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통·리·반장의 자격) ① 통·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리·반의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 구역과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li> <li>2. 통·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li> </ol> <p>②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은 새로 설치되는 통·리·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제7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리에는 이장을 둔다.</p> <p>② 읍·면·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p> <p>③ 읍·면·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원만하게 통·리장이 선출</p>	<p>제1조(목적) ----- 제7조----- ----- -----.</p> <p>&lt;삭 제&gt;</p> <p>제6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p> <p>② 통·리·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적  
임자로 선정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리장 후보자  
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통·리장 후  
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공  
개모집에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통·리장 후보자가 없거나 위  
원회의 심사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  
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을 공개모집 하  
여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  
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  
·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의2 (생 략)

제8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반에 반  
장을 둔다.

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  
리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통·리·반장의 임기) ① 통·리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이 가능하다. 다만, 그 임기가 끝나  
는 날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을 달리 적용한다.

<삭 제>

제10조 (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삭 제>

<삭 제>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임기  
만료일 6월 30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임기  
만료일 12월 31일

② 통·리·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통·리·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의 임기는 임명  
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  
다.

제10조(통·리·반장의 복무) ①·②  
(생략)

③ 읍·면·동장은 통·리장으로 임명  
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통·리·반장의 해임) ① 읍·  
면·동장은 통·리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통·리  
·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
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리·

제7조(통·리·반장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리장증-----.

제8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삭제>

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5.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통·리·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② 통리반장을 직권 해임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해당 통·리·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통·리장 또는 반장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면·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수당 등) ① 통·리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리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 제1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3조(수당 등) ① -----  
-----  
----- 범위-----  
-----.

② ----- 범  
위-----  
-----.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7조 및 제18

## 조와 같음)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을 서암9리	제1반	759-34번, 759-35번, 759-13번, 759-17번, 759-2번, 759-37번, 759-41번, 759-61번, 760-7번, 759-34번, 759-16번지
	제2반	760-3번, 764번, 765-4번, 766-2번, 768-5번, 769-5번, 833번지
	제3반	768-2번, 842-2번지
통진을 서암12리	제1반	746-1번지
	제2반	98번, 743번, 779번, 산94번, 744번, 799번, 740번, 742번, 745번, 97번지
통진을 서암14리	제1반	885-896, 946-1, 산67-11
	제2반	828-831, 846-848, 852-3, 852-8-852-13
	제3반	773-788, 880-6

[ 별표 1 ]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을 서암9리	제1반	759-34, 759-35, 759-13, 759-17, 759-2, 759-37, 759-41, 759-61, 760-7, 759-34, 759-16번지
	제2반	760-3, 764, 765-4, 766-2, 768-5, 769-5, 833번지
	제3반	768-2, 842-2번지
통진을 서암12리	제1반	746-1, 756-1, 756-18, 756-2, 756-3, 772-6, 773, 790-2, 790-5, 790-5, 790-6, 933-30번지
	제2반	98, 743, 779, 산94, 744, 799, 740, 742, 745, 97번지
통진을 서암14리	제1반	885-896, 946-1, 산67-11번지
	제2반	828-831, 839-1, 839-2, 839-3,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 840-7, 840-10, 840-17, 841-3, 846-848, 852-3, 852-8-852-13, 933-28번지
	제3반	773-788, 880-6번지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을 마송11리	제1반	509번, 510번, 512-3번, 514-1-5번, 515-1-5번, 516번, 516-1-2번, 517-1-4번, 519-1-5번, 520번, 521-1-5번, 522-1-6번, 523번, 524-1-8번, 525번, 528-1-8번, 529-1-4번, 530-1-10번, 533번지
	제2반	518번, 518-1번, 526번, 527번, 531-1-7번, 532-1-10번, 534번, 535번, 536번, 536-1번, 536-2번지
	제3반	568-7번, 537-6번, 548-4번, 548-3번, 548-2번, 548-1번, 604-1번, 14-88번, 14-82번, 15-3번, 15-7번, 15-1번, 14-37번, 14-27번, 14-12번, 14-36번, 14-11번, 14-26번, 12-6번, 12-7번, 12-4번, 12-13번, 11-12번, 11-5번, 11-12번, 11-11번, 10번, 9-4번, 6-3번, 6-2번, 6-1번, 5-1번, 7-1번, 8-6번, 24-5번, 28-4번, 27-8번, 605-5번, 605-4번, 605-3번, 605-2번지
	제4반	544-9번, 32-5번, 31번, 31-1번, 546-1번, 556-7번, 557-5번, 615-1번, 558-3번, 558-2번, 558-1번, 556-3번, 556-2번, 556-1번, 556번, 1-2번, 565-12번, 562-1번, 562-2번, 562-3번, 562-4번, 562-5번, 562-6번, 562-7번, 562-8번, 562-9번, 563-8번, 564번, 564-1번, 564-2번, 565-6번, 565-5번, 565-4번, 565-3번, 565-2번, 565-1번, 613-1번, 553번, 553-1번, 551-1번, 551번, 872번, 877번, 881번, 882번, 28-5번, 27-2번, 543-2번, 543-1번, 542-2번, 542-1번, 541-2번, 541-1번, 541-5번, 541-4번, 544-1번지
통진을 마송12리	제1반	580-1번, 582-1-7번, 583-1-10번, 584-1-10번, 626-1번, 630-2번지
	제2반	580-2-4번, 581-1-5번, 585-1-8번, 586번, 586-1번, 587번, 588번지, 588-1번지
	제3반	571-1-9번, 572-1-6번, 573-1-10번, 568번, 568-1번
	제4반	574-1-8번, 575-1-5번, 576-1-4번, 569번, 570번, 577번, 578번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을 마송11리	제1반	509, 510, 512-3, 514-1-5, 515-1-5, 516, 516-1-2, 517-1-4, 519-1-5, 520, 521-1-5, 522-1-6, 523, 524-1-8, 525, 528-1-8, 529-1-4, 530-1-10, 533번지
	제2반	518-1, 526, 527, 531-1-7, 532-1-10, 534, 535, 536, 536-1, 536-2번지
	제3반	568-7, 537-6, 548-4, 548-3, 548-2, 548-1, 604-1, 14-88, 14-82, 15-3, 15-7, 15-1, 14-37, 14-27, 14-12, 14-36, 14-11, 14-26, 12-6, 12-7, 12-4, 12-13, 11-12, 11-5, 11-12, 11-11, 10, 9-4, 6-3, 6-2, 6-1, 5-1, 7-1, 8-6, 24-5, 28-4, 27-8, 605-5, 605-4, 605-3, 605-2번지
	제4반	544-9, 32-5, 31, 31-1, 546-1, 556-7, 557-5, 615-1, 558-3, 558-2, 558-1, 556-3, 556-2, 556-1, 555, 1-2, 565-12,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8, 564, 564-1, 564-2, 565-6, 565-5, 565-4, 565-3, 565-2, 565-1, 613-1, 553, 553-1, 551-1, 551, 872, 877, 881, 882, 28-5, 27-2, 543-2, 543-1, 542-2, 541-2, 541-1, 541-5, 541-4, 544-1번지
통진을 마송12리	제1반	580-1, 582-1-7, 583-1-10, 584-1-10, 626-1, 630-2번지
	제2반	580-2-4, 581-1-5, 585-1-8, 586-1, 587, 588, 588-1번지
	제3반	571-1-9, 572-1-6, 573-1-10, 568, 568-1번지
	제4반	574-1-8, 575-1-5, 576-1-4, 569, 577, 578번지

## <신 설>

통·리명	반의 명칭	관 할 구 역
통진을 마송17리	제1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1동 101-13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704호 105-1705호 삼가동
	제2반	586번지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2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동·리명	반의 숫자	관할구역		
	제3반	586번지	e편 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3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504호 105-1505호
	제4반	586번지	e편 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4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제5반	586번지	e편 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5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제6반	586번지	e편 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6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제7반	586번지	e편 한세상 김포어반베뉴	207동 101-1801호 102-1802호 103-1803호 104-1804호 105-1805호
통진읍 마송18리	제1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1동 3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상가동
	제2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2동 1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305-1505호 306-1506호 107-1507호 108-1508호
	제3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3동 101-1501호 103-1503호 104-1504호 105-1505호 306-1506호 307-1507호 308-1508호 109-1409호 110-1410호 111-1411호 112-1412호
	제4반	570번지	김포마송 행복주택	304동 101-1401호 102-1402호 103-1403호 104-1404호 105-1405호 306-1406호 307-1407호 308-1408호
통진읍 마송19리	제1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원대주택	701동 301-901호 302-902호 303-1203호 304-1204호 305-1205호 306-1206호 307-1207호 308-1208호 309-1609호 310-1610호 311-1611호 312-1612호 상가동
	제2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원대주택	702동 101-1601호 102-1602호 1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신 설>

분리·리영	여객차의 상차선	관할구내		
				106-1606호 107-1607호 308-1608호 109-909호 110-910호
제3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3동	101-1601호 102-1602호 3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107-1607호 108-1608호 109-1309호 110-1310호
제4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4동	101-1601호 102-1602호 303-1603호 104-1604호 105-1605호 106-1606호 107-1607호 108-1608호 109-1309호 110-1310호
제5반	518번지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	705동	301-1601호 302-1602호 303-1603호 304-1604호 305-1205호 306-1206호 307-1207호 308-1208호 309-1209호 310-1210호 311-1111호 312-1112호

분리·리영	여객차의 상차선	관할구내		
양곡26리	제1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1동 201-1201호 202-1202호 203-1203호 204-1204호
	제2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1동 205-1205호 206-1206호 207-1207호 208-1208호 209-1209호 210-1210호 211-2111호 212-1212호
	제3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2동 101-1901호 102-1902호 303-1903호 304-1904호
	제4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2동 205-1905호 206-1906호 207-1907호 208-1908호 209-1909호
	제5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2동 110-1910호 111-1911호 112-1912호 113-1913호
	제6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3동 101-2001호 102-2002호 103-2003호 104-2004호
	제7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3동 305-2005호 206-2006호 107-2007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108-2008호 109-2009호
	제8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3동 110-2010호 111-2011호 112-2012호 113-2013호
	제9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4동 101-1701호 102-1702호 103-1703호 104-1704호
	제10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4동 105-1705호 106-1706호 107-1707호 108-1708호 109-1709호
	제11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4동 310-1710호 311-1711호 112-1712호 113-1713호
	제12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5동 201-1201호 202-1202호 203-1203호 204-1204호 205-1205호 206-1206호 307-1207호
	제13반	1276번지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	105동 308-1208호 309-1209호 310-1210호 311-1211호 312-1212호 313-1213호 314-1214호 상기동 101 ~ 108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학운11리	제1반	2778-2885번지		
	제2반	2826-2885번지		
	제3반	2886-2926번지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학운11리	제1반	2778-2798, 2836-2842번지		
	제2반	2799-2825번지		
	제3반	2826-2835, 2850-286번지		
	제4반	2873-2912번지		
	제5반	2843-2849, 2913-2927, 2828-2944번지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장기본동 장기1통	제1반	113, 131, 132, 135, 138, 140, 143, 144, 147, 149, 154, 156번지		
	제2반	110, 125, 126, 128, 134, 135, 138, 118, 133, 155번지		
	제3반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55, 57, 63, 114, 178-10, 178-23, 178-25, 178-26, 178-11, 178-16, 178-19, 178-20, 178-27, 178-21, 178-22번지		
장기본동 장기2통	제1반	1, 4-5, 7-15, 17-22, 24-25, 27-42, 44-50, 52-75, 77, 80-86, 88-89, 90-91, 93-94, 96, 277, 280, 283, 284-286번지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장기본동 장기1통	제1반	113, 131, 132, 135, 138, 140, 143, 144, 147, 149, 154, 156번지		
	제2반	110, 118, 125, 126, 128, 133, 134, 135, 138, 155번지		
	제3반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55, 57, 63, 90-91, 104, 114, 178-10, 178-23, 178-25, 178-26, 178-11, 178-16, 178-19, 178-20, 178-27, 178-21, 178-22번지		
장기본동 장기2통	제1반	1, 4-5, 7-15, 17-22, 24-25, 27-42, 44-50, 52-75, 77, 80-86, 88-89, 93-94, 96, 277, 280, 283, 284-286번지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장기본동 장기11통	제1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애아파트	301동 101호-1504호
	제2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애아파트	302동 101호-1803호
	제3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애아파트	303동 101호-1804호

통·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장기본동 장기11통	제1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이울림	301동 101호-1504호
	제2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이울림	302동 101호-1803호
	제3반	1629번지	한강신도시이울림	303동 101호-1804호

동·리명	반의 의정	관할구역			
	제4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엔아파트	304동	101호~1804호
	제5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엔아파트	305동	101호~1702호
	제6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엔아파트	306동	101호~1804호
	제7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엔아파트	307동	101호~1804호
	제8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엔아파트	308동	101호~1803호
	제9반	1629번지	고창마을 자연엔아파트	309동	101호~1504호

동·리명	반의 의정	관할구역			
	제4반	1629번지	현강신도시서울림	304동	101호~1804호
	제5반	1629번지	현강신도시서울림	305동	101호~1702호
	제6반	1629번지	현강신도시서울림	306동	101호~1804호
	제7반	1629번지	현강신도시서울림	307동	101호~1804호
	제8반	1629번지	현강신도시서울림	308동	101호~1803호
	제9반	1629번지	현강신도시서울림	309동	101호~1504호

## <신 설>

동·리명	반의 의정	관할구역			
장기본동 장기31동	제1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래우스 라세느	101동	201호~210호
				102동	101호~103호 201호~208호
				103동	101호~104호 201호~208호
				104동	101호~111호 307호
	제2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래우스 라세느	105동	101호~117호 306호
				106동	101호~109호
				107동	101호~114호 309호
	제3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래우스 라세느	108동	101호~106호
				109동	101호~104호 107호~110호 205호~206호 304호 307호
				110동	101호~106호
				111동	101호~106호
				112동	101호~105호 108호~114호 305호~308호
	제4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래우스 라세느	113동	201호~208호
				114동	101호~103호 201호~208호
				115동	101호~108호
				116동	101호~108호
	제5반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래우스 라세느	117동	101호~104호 107호~110호 205호~206호 304호 307호
				118동	101호~104호 107호~110호 205호~206호 304호 307호
				119동	101호~106호
				120동	101호~106호
				121동	101호~105호 109호~113호

동명·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305호-309호
		122동 101호-107호
		123동 101호-106호
	124동 101호-109호	
	제7반	125동 101호-104호 109호 201호-208호
		1894-9번지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래우스 라세느 126동 101호-104호 201호-208호
127동 101호-104호 109호 201호-208호		
128동 101호-107호		

동명·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사우동 사우15통	제1반	1155-1239, 1366
	제2반	1309-3-1309-8
	제3반	1255-1256, 1297, 1304, 1305, 1309, 1309-1, 1309-2, 1309-9-1312, 산47, 산49
	제4반	1246-1254, 125-1296
사우동 사우31통	제1반	1116-1130
	제2반	1134-1140
	제3반	1141-1153, 1369, 1373
	제4반	1132-1133, 1376

동명·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사우동 사우15통	제1반	1155-1159, 1162-1170, 1172, 1176-1239, 1366번지
	제2반	1309-3-1309-8번지
	제3반	1255-1256, 1297, 1304, 1305, 1309, 1309-1, 1309-2, 1309-9-1312, 산47, 산49번지
	제4반	1246-1254, 125-1296번지
사우동 사우31통	제1반	1116-1130번지
	제2반	1134-1140번지
	제3반	1141-1153, 1160-1161, 1171, 1173-1175, 1369, 1373, 번지
	제4반	1132-1133, 1376번지

동명·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유양동 유양4통	제1반	산21번, 819번, 876번, 9-896번, 913번, 931번, 932번, 933번, 936번, 940번, 944번, 950번지
	제2반	820번, 828번, 831번, 834번지
유양동 유양7통	제1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1동
	제2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2동
	제3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3동
	제4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4동

동명·리명	반의 명칭	관할 구역
유양동 유양4통	제1반	790, 880, 882-9, 892, 894-6, 931, 933-9, 940-6, 951-1, 952-9, 961-3, 963-1, 2, 4, 967번지
	제2반	840-1, 866, 874, 890-1, 904-9, 921-4, 928, 930-1, 963-3, 964-5, 977-9, 980, 1001-8, 1049, 1053-6, 1058, 1060-9, 1070-2, 1166-9, 1171, 1185-7, 1190-9, 1211번지
	제3반	826-9, 830-9, 875-6, 883, 950-1, 1205-9, 1215-6, 1245-6, 산98, 산109-2번지
유양동 유양7통	제1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1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제2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2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8호-608호
	제3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3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8호-608호
	제4반	999-2번지 성창아파트 4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이름 · 리명	10자리 주민등록번호	내 역 구 명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07, 1007-6, 1008-4, 1233-10, 1011-3, 1012-2, 1013-2, 1013-7, 1013-8, 산147-1번지

[ 별표 2 ] 통리장의 정수

읍 · 동 · 면 · 명	통리 명	정 수
동해 진 평리	마 송 리	15
장기면 평리	양 곡 리	22
장기면 평리	장 기 동	30

[ 별표 2 ] 통리장의 정수

읍 · 동 · 면 · 명	통리 명	정 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1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행 2022. 2. 11.]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906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의 조직)** 읍·면·동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면에 리를 두며, 통·리에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통·리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읍·면 : 리는 2개 반 이상, 반은 20가구 이상
2. 동 : 통은 4개 반 이상, 반은 30가구 이상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통·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제5조(통·리장의 정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4.4.16., 2014.12.26., 2015.7.31.>

**제6조(통·리·반장의 자격)** ① 통·리장 또는 반장은 해당 통·리·반의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할구역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주 구역과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7., 2021.5.14.>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2. 통·리장 회의와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사람
- ②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은 새로 설치되는 통·리·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5.14.>

③ 읍·면·동장은 주민총회(대동회)에서 원만하게 통·리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을 통·리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리장 후보자의 공

정한 심사를 위해 통·리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14.>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통·리장 후보자가 없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을 공개모집 하여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기존6항에서 이동>

⑤ 삭제 <2021.5.14.>

**제7조의2(협의회 설치)** ① 읍·면·동에는 통·리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리장협의회를 두고, 각 읍·면·동 통·리장협회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통리장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9.6.26.>

② 각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6.26.>

**제8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리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동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통·리·반장의 임기)** ① 통·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을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1.5.14.>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임기만료일 6월 30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임기만료일 12월 31일

② 통·리·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통·리·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통·리·반장의 복무)** ① 통·리·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통·리·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

② 통·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통·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1조(통·리·반장의 직무)** 통·리장은 읍·면·동장의, 반장은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리·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

2.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6.>
5. 통·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이전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5호에서 이동 2014.12.26.>
7.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활필수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이전 제6호에서 이동 2014.12.26.>
8. 그 밖에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전 제7호에서 이동 2014.12.26.>

**제12조(통·리·반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통·리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통·리·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때 <개정 2017.12.27.>
  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리·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5.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6.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통·리·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 ② 통리반장을 직권 해임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해당 통·리·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통·리장 또는 반장은 선고되기 전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며, 읍·면·동장은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12.27.>

**제13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매월 반상회 이전에 통·리장 회의를 정기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면·동장, 통·리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 통·리·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통·리·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편의제공)** 시장은 통·리·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직무수행을 위한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
4. 그 밖에 시장과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① 통·리장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리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리·반장은 통·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와 김포시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 김포시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참고 3

### 지도자료

#### □ 개요

- 통진읍 : 서암9리-서암12·14리 경계조정, 마송17리, 마송18리, 마송 19리 신설 등
- 양촌읍 : 양곡26리 신설, 학운11리 반 신설
- 장기분동 : 장기1통-장기2통 경계조정, 장기11통 공동주택 명칭 변경, 장기31통 신설
- 사우동 : 사우15통-사우31통 경계조정
- 운양동 : 운양4통 반 신설, 운양4통-운양7통 경계조정

#### □ 주요내용

- (통진읍) 서암9리-서암12·14리 경계조정
  - 지번 순서대로 구획된 일부 구역을 도로 기준으로 실제 생활권과 일치되도록 관할구역 조정

현 행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통진읍 서암9리	제1반	759-34번 759-35번 759-13번 759-17번 759-2번 759-37번 759-41번 759-61번 760-7번 759-34번 759-16번지	
	제2반	760-3번 764번 765-4번 766-2번 768-5번 769-5번 833번지	
	제3반	768-2번 842-2번지	
통진읍 서암12리	제1반	746-1번지	
	제2반	98번 743번 779번 사94번 744번 799번 740번 742번 745번 97번지	
통진읍 서암14리	제1반	885~896, 946-1, 산67-11	
	제2반	828~831, 846~848, 852-3, 852-8-852-13	
	제3반	773~788, 880-6	



개정(안)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통진읍 서암9리	제1반	759-34, 759-35, 759-13, 759-17, 759-2, 759-37, 759-41, 759-61, 760-7, 759-34, 759-16번지	
	제2반	760-3, 764, 765-4, 766-2, 768-5, 769-5, 833번지	
	제3반	768-2, 842-2번지	
통진읍 서암12리	제1반	746-1, 756-1, 756-18, 756-2, 756-3, 772-6, 773, 790-2, 790-5, 790-5, 790-6, 933-30번지	
	제2반	98, 743, 779, 사94, 744, 799, 740, 742, 745, 97번지	
통진읍 서암14리	제1반	885~896, 946-1, 산67-11번지	
	제2반	828~831, 839-1, 839-2, 839-3,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 840-7, 840-10, 840-17, 841-3, 846~848, 852-3, 852-8-852-13, 933-28번지	
	제3반	773~788, 880-6번지	

#### - 관할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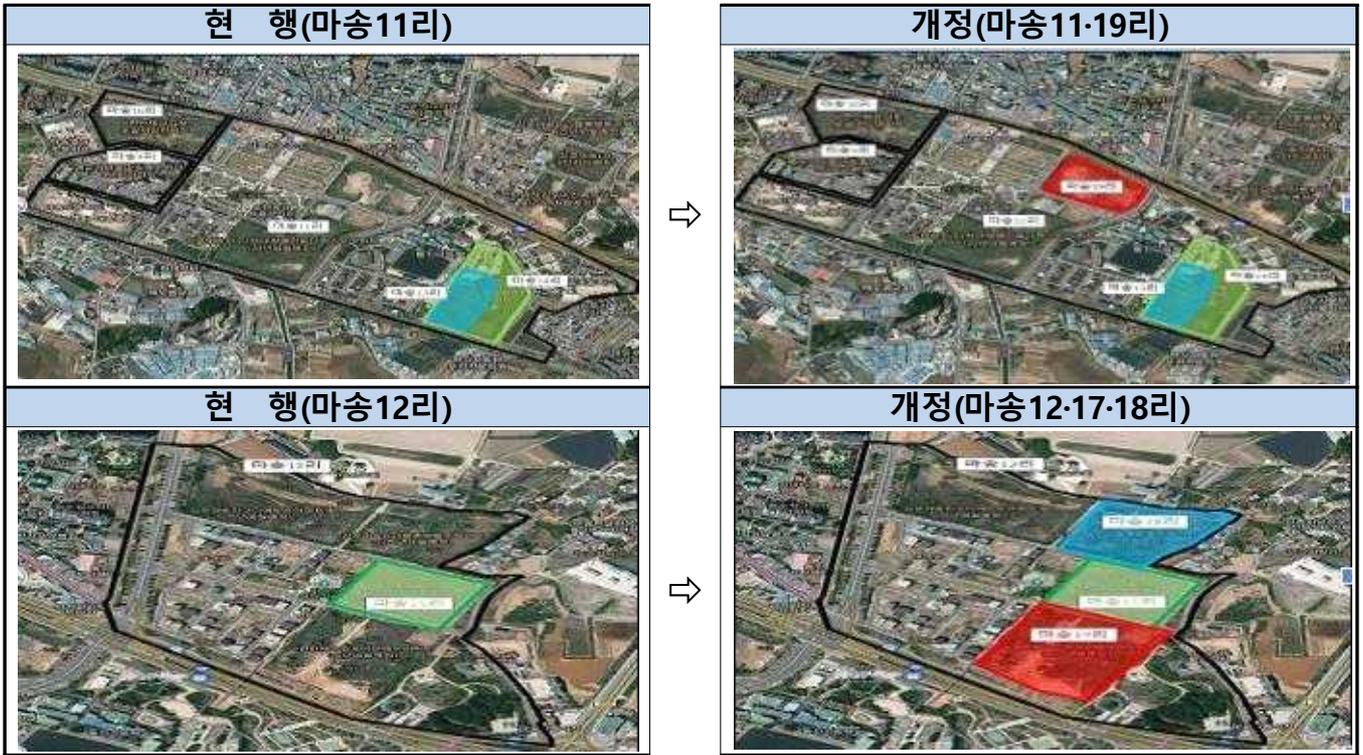


○ (통진읍)마송11리, 마송 12리 구획 조정, 마송17리, 마송18리, 마송 19리 신설  
-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및 리 신설

현행				개정(안)				
리명	반의개수	관할구역	비고	리명	반의개수	관할구역	비고	
마송11리	제1반	509번 510번 512-3번 514-1~5번 515-1~5번 516번 516-1~2번 517-1~4번 519-1~5번 520번 521-1~5번 522-1~6번 523번 524-1~8번 525번 528-1~8번 529-1~4번 530-1~10번 533번지		→	마송11리	제1반	509, 510, 512-3, 514-1~5, 515-1~5, 516, 516-1~2, 517-1~4, 519-1~5, 520, 521-1~5, 522-1~6, 523, 524-1~8, 525, 528-1~8, 529-1~4, 530-1~10, 533번지	
	제2반	518번 518-1번 526번 527번 531-1~7번 532-1~10번 534번 535번 536번 536-1번 536-2번지				제2반	518-1, 526, 527, 531-1~7, 532-1~10, 534, 535, 536, 536-1, 536-2번지	
	제3반	568-7번 537-6번 548-4번 548-3번 548-2번 548-1번 604-1번 14-88번 14-82번 15-3번 15-7번 15-1번 14-37번 14-27번 14-12번 14-36번 14-11번 14-26번 12-6번 12-7번 12-4번 12-13번 11-12번 11-5번 11-12번 11-11번 10번 9-4번 6-3번 6-2번 6-1번 5-1번 7-1번 8-6번 24-5번 28-4번 27-8번 605-5번 605-4번 605-3번 605-2번지				제3반	568-7, 537-6, 548-4, 548-3, 548-2, 548-1, 604-1, 14-88, 14-82, 15-3, 15-7, 15-1, 14-37, 14-27, 14-12, 14-36, 14-11, 14-26, 12-6, 12-7, 12-4, 12-13, 11-12, 11-5, 11-12, 11-11, 10, 9-4, 6-3, 6-2, 6-1, 5-1, 7-1, 8-6, 24-5, 28-4, 27-8, 605-5, 605-4, 605-3, 605-2번지	
	제4반	544-9번 32-5번 31번 31-1번 546-1번 556-7번 557-5번 615-1번 558-3번 558-2번 558-1번 556-3번 556-2번 556-1번 555번 1-2번 565-12번 562-1번 562-2번 562-3번 562-4번 562-5번 562-6번 562-7번 562-8번 562-9번 563-8번 564번 564-1번 564-2번 565-6번 565-5번 565-4번 565-3번 565-2번 565-1번 613-1번 553번 553-1번 551-1번 551번 872번 877번 881번 882번 28-5번 27-2번 543-2번 543-1번 542-2번 542-1번 541-2번 541-1번 541-5번 541-4번 544-1번지				제4반	544-9, 32-5, 31, 31-1, 546-1, 556-7, 557-5, 615-1, 558-3, 558-2, 558-1, 556-3, 556-2, 556-1, 555, 1-2, 565-12,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8, 564, 564-1, 564-2, 565-6, 565-5, 565-4, 565-3, 565-2, 565-1, 613-1, 553, 553-1, 551-1, 551, 872, 877, 881, 882, 28-5, 27-2, 543-2, 543-1, 542-2, 542-1, 541-2, 541-1, 541-5, 541-4, 544-1번지	
마송12리	제1반	580-1번 582-1~7번 583-1~10번 584-1~10번 626-1번 630-2번지		→	마송12리	제1반	580-1, 582-1~7, 583-1~10, 584-1~10, 626-1, 630-2번지	
	제2반	580-2~4번 581-1~5번 585-1~8번 586번 586-1번 587번 588번지 588-1번지				제2반	580-2~4, 581-1~5, 585-1~8, 586-1, 587, 588, 588-1번지	
	제3반	571-1~9번 572-1~6번 573-1~10번 568번 568-1번				제3반	571-1~9, 572-1~6, 573-1~10, 568, 568-1번지	
	제4반	574-1~8번 575-1~5번 576-1~4번 569번 570번 577번 578번				제4반	574-1~8, 575-1~5, 576-1~4, 569, 577, 578번지	

개정(안)			
리명	반의개수	관할구역	비고
마송17리	7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201~207동) (마송리 586번지)	
마송18리	4	김포마송 행복주택(301동~304동) (마송리570번지)	
마송19리	5	김포마송 국민임대주택(701동~705동) (마송리 51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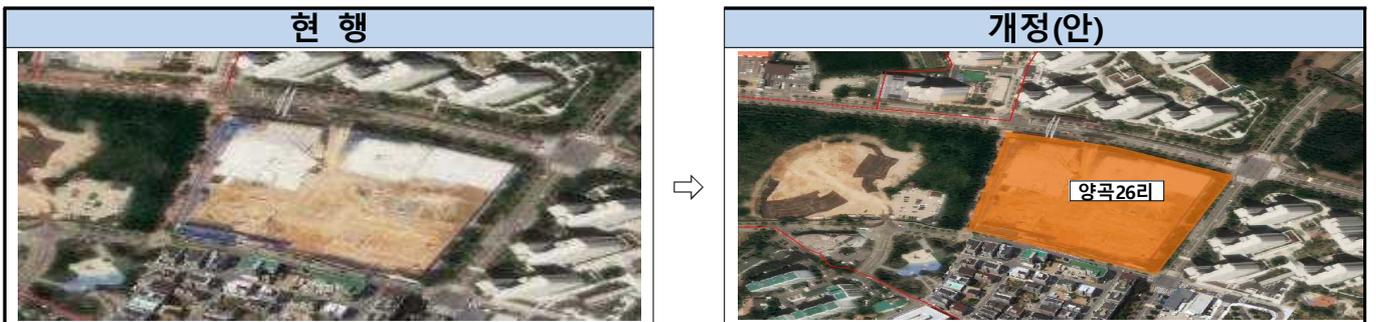
- 관할구역도



○ (양촌읍) 양곡26리 신설 :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및 리 신설

개정(안)			
리 명	반의개수	관할구역	비고
양곡26리	13	김포양곡 엘에이치 1단지 아파트(101~105동) (양곡리 1276번지)	

- 관할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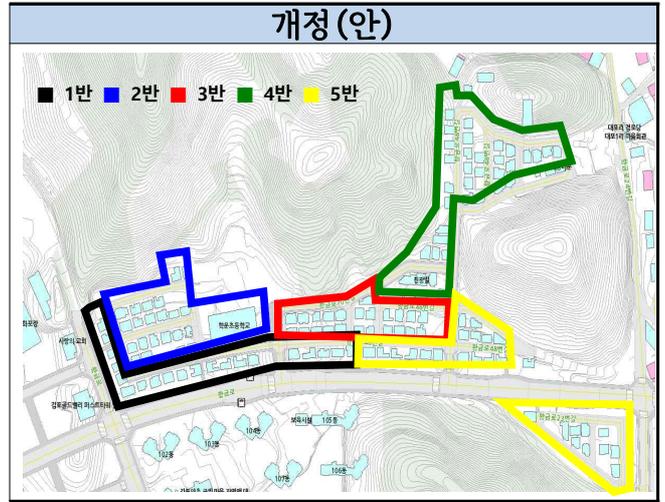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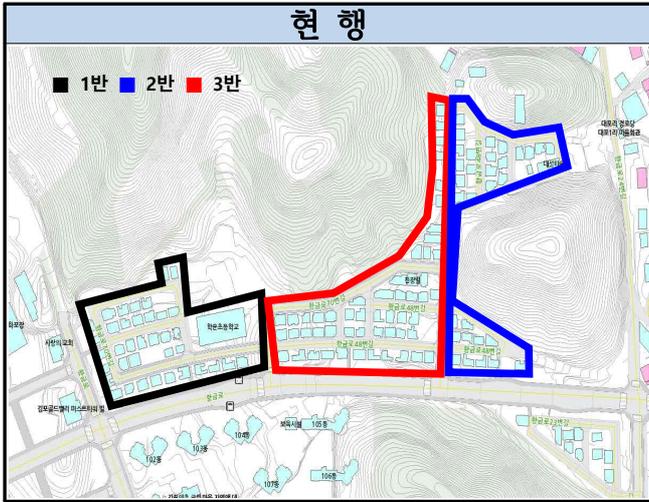


○ (양촌읍)학운11리 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

- 주택 신축 및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

현 행				개정(안)			
리 명	밖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리 명	밖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학운11리	제1반	2778~2825번지		학운11리	제1반	2778~2798, 2836~2842번지	
	제2반	2826~2885번지			제2반	2799~2825번지	
	제3반	2886~2926번지			제3반	2826~2835, 2850~286번지	
		제4반	2873~2912번지				
			제5반		2843~2849, 2828~2944번지	2913~2927,	

- 관할구역도



○ (장기본동)장기1통-장기2통 경계조정

- 장기1통과 장기2통의 경계를 배수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대표번지 추가

현행			
리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장기 1통	제1반	113, 131, 132, 135, 138, 140, 143, 144, 147, 149, 154, 156번지	
	제2반	110, 125, 126, 128, 134, 135, 138, 118, 133, 155번지	
	제3반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55, 57, 63, 114, 178-10, 178-23, 178-25, 178-26, 178-11, 178-16, 178-19, 178-20, 178-27, 178-21, 178-22번지	
장기 2통	제1반	1, 4~5, 7~15, 17~22, 24~25, 27~42, 44~50, 52~75, 77, 80~86, 88~89, 90~91, 93~94, 96, 277, 280, 283, 284~286번지	

개정(안)			
리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장기 1통	제1반	113, 131, 132, 135, 138, 140, 143, 144, 147, 149, 154, 156번지	
	제2반	110, 118, 125, 126, 128, 133, 134, 135, 138, 155번지	
	제3반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55, 57, 63, 90~91, 104, 114, 178-10, 178-23, 178-25, 178-26, 178-11, 178-16, 178-19, 178-20, 178-27, 178-21, 178-22번지	
장기 2통	제1반	1, 4~5, 7~15, 17~22, 24~25, 27~42, 44~50, 52~75, 77, 80~86, 88~89, 93~94, 96, 277, 280, 283, 284~286번지	

- 관할구역도



○ (장기본동)장기11통 공동주택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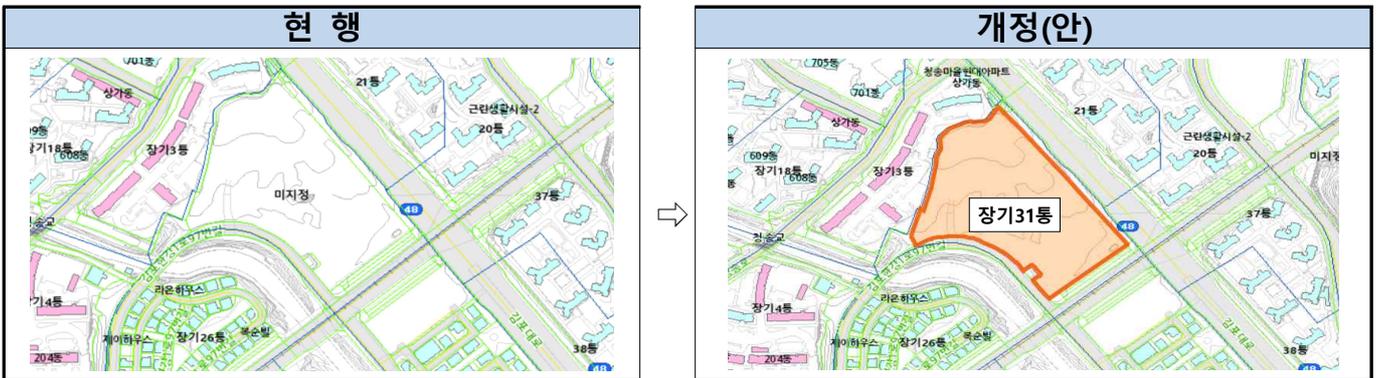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명칭 변경

현 행				개정(안)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장기11통	9	고창마을 자연앤아파트 (장기동1629번지)		장기11통	9	한강신도시 어울림 (장기동1629번지)	

○ (장기본동)장기31통 신설 :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 신설

개정(안)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장기31통	7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101~128동) (장기동 1894-9번지)	

- 관할구역도



○ (사우동)사우15통-사우31통 경계조정

-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구획

현 행				개정(안)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리 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15통	제1반	1155~1239, 1366		사우15통	제1반	1155~1159, 1162~1170, 1172, 1176~1239, 1366	
	제2반	1309-3~1309-8번지			제2반	1309-3~1309-8번지	
	제3반	1255~1256, 1297, 1304, 1305, 1309, 1309-1, 1309-2, 1309-9~1312, 산47, 산49번지			제3반	1255~1256, 1297, 1304, 1305, 1309, 1309-1, 1309-2, 1309-9~1312, 산47, 산49번지	
	제4반	1246~1254, 125~1296번지			제4반	1246~1254, 125~1296번지	
31통	제1반	1116~1130번지		사우31통	제1반	1116~1130번지	
	제2반	1134~1140번지			제2반	1134~1140번지	
	제3반	1141~1153, 1369, 1373			제3반	1141~1153, 1369, 1373, 1160~1161, 1171, 1173~1175	
	제4반	1132~1133, 1376번지			제4반	1132~1133, 1376번지	

- 관할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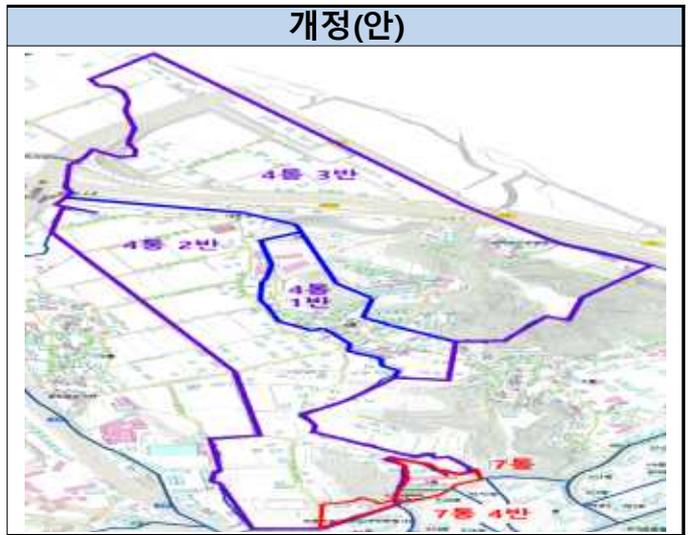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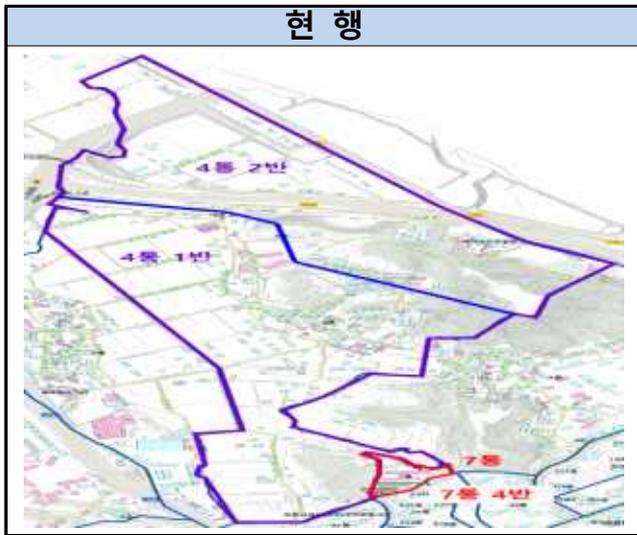
- (운양동)운양4통 반 신설, 운양4통-운양7통 경계조정
-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 신설 및 관할구역 구획 조정

현행			
리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운양4통	제1반	산21번 819번 876번 9-886번 913번 931번 932번 933번 936번 940번 944번 950번지	
	제2반	820번 828번 831번 834번지	
운양7통	제1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1동	
	제2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2동	
	제3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3동	
	제4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4동	



개정(안)			
리명	반의 개수	관할구역	비고
운양4통	제1반	790, 880, 882-9, 892, 894-6, 931, 933-9, 940-6, 951-1, 952-9, 961-3, 963-1,2,4, 967번지	
	제2반	840-1, 866, 874, 890-1, 904-9, 921-4, 928, 930-1, 963-3, 964-5, 977-9, 980, 1001-8, 1049, 1053-6, 1058, 1060-9, 1070-2, 1166-9, 1171, 1185-7, 1190-9, 1211번지	
	제3반	826-9, 830-9, 875-6, 883, 950-1, 1205-9, 1215-6, 1245-6, 산98, 산109-2번지	
운양7통	제1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1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제2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2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8호-608호
	제3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3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8호-608호
	제4반	999-2번지 성향아파트 4동	101호-601호 102호-602호 103호-603호 104호-604호 105호-605호 106호-606호 107호-607호
			1007, 1007-6, 1008-4, 1233-10, 1011-3, 1012-2, 1013-2, 1013-7, 1013-8, 산147-1번지

- 관할구역도



○ 통리장의 정수

현행		
읍·동·면 명	통리 명	정원
통진읍	마송리	15
양촌읍	양곡리	22
장기본동	장기동	30



개정(안)		
읍·동·면 명	통리 명	정원
통진읍	마송리	18
양촌읍	양곡리	23
장기본동	장기동	31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004호
----------	--------

제출년월일 2022. 08. 26.  
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1. 수정이유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상 시행일이 안건 의결 전 시행으로 개정되어 있는바 혼란 예방을 위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로 변경하고자 수정함.

## 2. 주요내용

- 부칙 제1조(시행일) 내용 중 '이 조례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내용 중 ‘이 조례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2년 9월 7일</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공포한 날</u> ----- ---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와 김포시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 김포시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